

2) 분쟁 개입

농민들이 당국에 분쟁해결을 요구했다고 해서 당국의 조치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농민들은 자력으로 요구를 관철하고자 했으며, 농민회는 분쟁에 개입하여 소작인에 유리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였다. 농민회는 지주와 직접 대결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작인들의 불만을 모아 결의 형식으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지주들에게 수용을 요구했다. 모내기철에는 지주의 탈작에 항의하고 기존의 소작인이 계속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주를 설득하거나 소작권을 주장하는 소작인 간에 형평에 따라 소작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기도 했다. 추수기에는 소작료 4할과 지세의 지주부담을 관철하기 위해 소작료 납부 현장에 입회하여 두량(斗量)을 공평히 하고 4할 이상의 수탈이 없도록 감시를 했다.

지주의 과도한 소작료 요구에 대해서는 소작료 불납동맹을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소작료를 거납(拒納)하도록 선동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농민회의 개입에 대해 지주들은 당국에 진정하여 불순분자들의 선동을 제압해달라고 요구했다. 위에서 말한 전남흥농회의 발기 동기도 농민회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목포에 기반을 둔 대지주단체인 전남농담회(全南農談會)는 농민회의 개입에 따른 집단적 자력구제가 사유재산권과 계약자유에 위배된다고 성토했다.¹⁾

1) 『동아일보』 1925. 4. 12.

